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라 함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주거생활향상 및 주거복지실현"을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

①시장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자치구청장과 SH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라 함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생략)	제3조 (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시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생략) ②----- <u>주거생활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u> ----- -----,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u> ----- -----, <u><신설></u> 제8조의2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 ①시장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자치구청장과 SH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